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8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호대 의원 외 11명
- 나. 제안일 : 2019년 1월 31일
- 다. 회부일 : 2019년 2월 7일
- 라. 상정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호대 의원)

### 가. 제안이유

-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현행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 이자지원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환 기간을 늘려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입법예고(2019. 2. 12. ~ 2. 19.) 결과 : 의견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대학생)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 졸업한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현행 2년)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2018년 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는 17,910명에게 총 15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인원	지원액
2018년	17,910	1,513
2017년	16,947	1,414
2016년	14,356	1,143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지원규모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지원실적		비고
				인원	지원액	
2015년	24,937건	620	98	6,585	610	
2016년	55,584건	1,174	97	14,356	1,143	
2017년	69,802건	1,424	99	16,947	1,414	
2018년	75,917건	1,724	88	17,910	1,513	
2019년 (지원계획)	80,000건	1,724	-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 지원기간 : 대학 재학 및 졸업 후 2년(휴학 6학기 포함)
- 지원이자 : 20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이자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과 다자녀 가구 대출자  
⇒ 발생이자 전액 지원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대출자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이자상환 발생시점

- 일반 상환학자금 : 대출시점부터 이자상환 의무 발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돈돈학자금) : 원금, 이자 모두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 유예

### 가. 이자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1조 ~ 안 제3조)

-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인 “서울지역 대학생”에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이는 장기화된 청년 실업 등의 대안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지역 <u>대학생들</u> 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대학생 및 대학원생들</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

<p>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u>국내 대학(교)</u>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학자금대출 이차지원) ① <u>대학생 학자금대출</u> 이차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u>대학교 및 대학원</u> ----- ----- -----.</p> <p>제3조(학자금대출 이차지원) ① <u>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u> ----- ----- -----.</p>
---	---

- 17개 시·도의 대학생 학자금 이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시·도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차를 지원하고 있고, 대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고등교육기관<sup>1)</sup>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을 포함)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명시적으로 대학원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이며, 경기도는 최근에 조례 개정(2018년 12월)을 통해 대학원생에게도 소득수준이나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 이차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 현황〉

연번	구분	관련 조례	비고
1	서울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u>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u>	안 제2조제3호
2	부산	"부산지역 대학생"이란 <u>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u> 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2조 제3항
3	인천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u>대학원생을 제외한다</u> )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4	광주	" <u>광주 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u> "이란 광주광역시 소재 <u>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중 학생</u> 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5	대전	"대학생"이란 대전광역시 소재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중인 학생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녀로서 대전광역시 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2조 제2항
6	경기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u> 을 말한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7	충북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u> 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8	전북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u> 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9	전남	"전라남도 지역 대학생"이란 <u>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u>	전라남도 대학생

연번	구분	관련 조례	비고
		<u>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나 다른 시·도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u> 으로 도에 주소를 두고, 도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10	경북	“대학생”이란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u> 으로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11	경남	“대학생”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u> 이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 ( <u>대학원생 제외</u> )을 말한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12	제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u>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을 포함한다), 중퇴 또는 자퇴한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u>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제주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13	울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u>시 관내 소재 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대학을 포함한다)의 학생</u> 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제3항

- 최근 학자금 대출 규모 및 대출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학자금 대출 체납액<sup>2)</sup> 및 미상환율<sup>3)</su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 대학원생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지역 청년의 대학원 진학률<sup>4)</sup>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용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자 및 대학 졸업후 취업자가 소외되고 배제되거나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률과 취업률〉



□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 2017년 서울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54.8%, 취업률은 22.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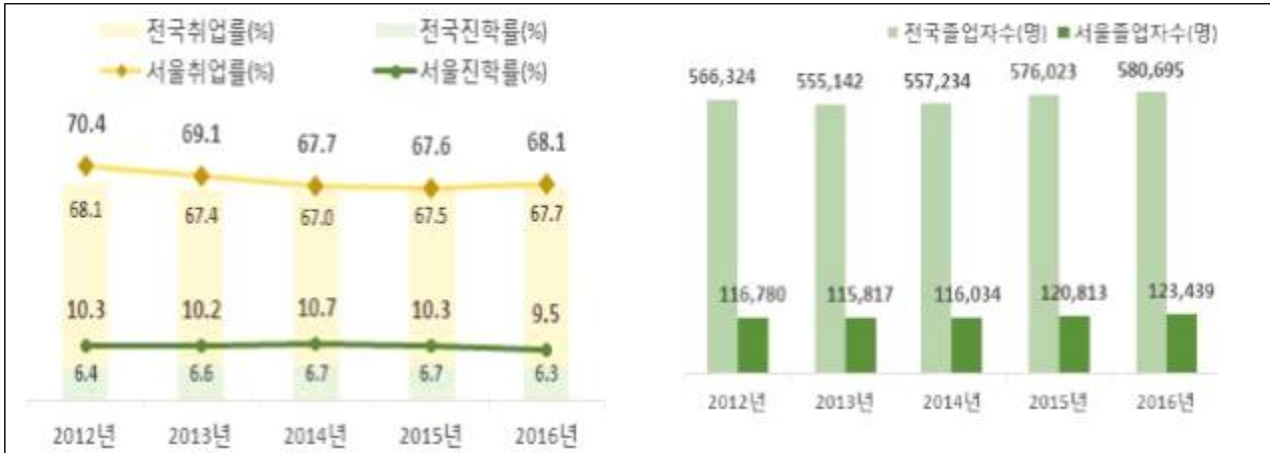
- 2017년 서울시 고등학교 졸업자 100,481명 중 진학자는 55,081명이며, 취업자는 10,185명임.

※ 서울시 청년 통계(2018, 경인지방통계청)

2) 한국정경신문(2018.11.12.), 학자금대출 못 갚는 청년 '비상'..취업후 학자금' 미상환율 3년만에 증가  
 3) 조세일보(2018.10.8.), 학자금 대출 체납액 1000억원 육박...장기미상환자 1만2000명  
 4) 진학률은 9.5%(진학자는 국내전문대학, 국내대학, 국내대학원, 국외전문대학, 국외대학, 국외대학원 진학자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 진학률만은 더 작은 수치일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청년 통계 :서울시 청년인구(2,319명, 19-34세 기준), 경인지방통계청, 2018년 12월



##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취업률과 진학률〉



### □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상황

○ 2016년 서울시 대학 및 대학원(이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수는 123,439명으로, 이 중 취업자수는 71,447명이고 진학자수는 11,749명임.

- 2016년 서울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68.1%**이며 진학률은 **9.5%**임.

※ 서울시 청년 통계(2018, 경인지방통계청)

○ 한편,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5)상 협의 대상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완료(2019년 4월 12일)하였음(참고자료 1 참조).

### 5)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3. 소득구간(분위) 8구간 이하 또는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				
5	경북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3년 1학기부터 일반상환(등록금/생활비), 취업후상환(등록금/생활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의 학생으로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이 신청기준일(8.27) 현재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휴학생 포함, 졸업자 및 대학원생 제외) 대출당시 소득구간(분위)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자 및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소득구간 무관)	대학 재학	10	한국장학재단 위탁운영	
6	광주	① 한국장학재단에서 '17년 1학기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②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③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대학 및 대학원 재학	8	한국장학재단 위탁운영	150
7	대구	1. 공고일 현재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구, 경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며(2018년 가을학기 졸업생 포함 / 2018년 가을학기 이전 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2. 2012년 부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고 3. 대출학기 소득 8구간(분위) 이하 계층 학생 및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	대학 재학 및 졸업후 6개월	11	한국장학재단 위탁운영	
8	대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등록금/생활비), 취업후상환(등록금/생활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 재(휴)학생 공고일 현재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광역시 외에 소재한 대학 재(휴)학생(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대학 재학	13	한국장학재단 위탁운영	
9	부산	1.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 휴학 중인 자(대학원생 제외) 2.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3. 대출 해당학기 소득 8구간(분위) 이내자(소득구간(분위) : 한국장학재단기준)	대학 재학	7	한국장학재단 위탁운영	440

10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주소를 둔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2.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상환(등록금/생활비), 취업후상환(등록금/생활비)받은 대학생 (휴학생 포함 / 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대학 재학	5	한국장학재단 위탁운영	20
11	울산	1. 공고일 기준 본인이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울산 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 이며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 부터 일반상환(등록금/생활비), 취업후상환(등록금/생활비)학자금대출을 받고 대출학기 소득 8구간(분위) 이하인 대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대학 재학	4	한국장학재단 위탁운영	20
12	인천	-	-	-	-	-
13	전남	-	-	-	-	-
14	전북	-	-	-	-	-
15	제주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18-2학기 기준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 후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 위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함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졸업후 10년	9	한국장학재단 위탁운영	350
16	충남	1.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충청남도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지를 두고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등록금/생활비), 취업후상환(등록금/생활비) 받은 재학생 * 제외대상: 휴학생, 수료상태인 졸업예정자, 2018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장학생, 1가구 2인 이상 지원불가 * 유의사항: 2018-2학기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은 지원불가	대학 재학	145	한국장학재단 위탁운영	
17	충북	신청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충청북도에서 주소를 둔 국내대학교에 재(휴)학 중이며 대출학기 기준 소득 8분위 이하인 대학생 - 지원대상 학자금대출 1. 2015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등록금/생활비) 2.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은 취업후상환 학자금(등록금/생활비)	대학 재학	4	한국장학재단 위탁운영	

○ 앞서 살펴 보았듯이 학자금 대출 체납액 및 미상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요 재원\*을 고려하여 졸업후 3년 이상이 지난 서울지역 대학생 (대학원생 포함)의 이자 지원으로 인해 재학중인 서울지역 대학생 (대학원생 포함)의 지원 규모가 감소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 비용추계에 따르면 5년간 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구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721,388	721,388	721,388	721,388	721,388	3,606,940

- 이자지원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여건과 평균적으로 졸업후 첫 취업을 하는 기간이 10.7개월(통계청, 2018년 5월 발표)<sup>6)</sup>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통계청)〉

- 청년층 인구는 91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5천명(-1.6%)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은 47.7%로 0.3%p 상승, 고용률은 42.7%로 0.3%p 하락
-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4년 2.7개월(남자 5년 2.4개월, 여자 3년 6.9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4개월 증가
  - 대졸자의 휴학경험 비율은 44.4%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소요기간은 10.7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1개월 증가,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9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3개월 증가
  -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수입)은 150만원~200만원 미만(33.8%), 100만원~150만원 미만(31.1%), 200만원~300만원 미만(15.3%) 순으로 나타났음

6) 다만, 본 통계는 전국 청년(915만명)을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임.

#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 청년층(15~29세)

- 경제활동참가율 47.7%  
(0.3%p) ↑
- 고용률 42.7%  
(0.3%p) ↓

9,157 천명  
(20.7%)

15세 이상 인구  
44,141천명

### 대학졸업자 (3년제이하 포함)

대학졸업자 : 2,926천명



- 평균 졸업소요기간 **0.4개월**  
4년 2.7개월 ↑
- 평균 휴학기간 **0.9개월**  
2년 1개월 ↓

###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취업 유경험자  
임금근로자 4,054천명



- (임금근로자)
- 첫 직장 근속기간 **0.3개월**  
1년 5.9개월 ↑
- 첫 일자리를 그만 둔 경우  
근속기간 **0.2개월**  
1년 1.9개월 ↑

### 졸업(중퇴)자 취업경험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4,788천명



- 취업경험 있음 **0.4%p**  
고졸이하 83.6% ↓
- 대졸이상 88.2% 동일



- 주된 취업경로 **0.5%p**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 30.3% ↑
- 공개채용시험 20.8% ↑ **2.0%p**

###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

취업유경험자 : 4,140천명



-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 **동일**  
근로여건 불만족 51.0%
- 첫 일자리 취업  
당시 임금(수입) **4.1%p**  
150만원~200만원 미만 33.8% ↑
- 100만원~150만원 미만 31.1% ↓ **6.4%p**

###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취업 유경험자  
임금근로자 4,054천명



- (임금근로자)
-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0.1개월**  
10.7개월 ↑
- 고졸이하 1년 4.0개월 ↑ **0.5개월**
- 대졸이상 7.7개월 ↓ **0.3개월**

###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시험 준비

비경제활동인구  
4,789천명



- 지난 1주간 취업시험 준비자 **1.2%p**  
13.1%(62만 6천명) ↓
- 취업시험 준비 분야 **3.3%p**  
일반직공무원 33.3% ↓
- 일반기업체 24.6% ↑ **4.0%p**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시 재정 여건과 시민의 눈높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생을 제외함(안 제1조, 안 제2조제3호, 안 제3조제1항).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관 련 368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22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시 재정 여건과 시민의 눈높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생을 제외함(안 제1조, 안 제2조제3호, 안 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대학생들”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중“대학교 및 대학원”을 “대학(교)”로 하며,

안 제3조제1항 중“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을 “대학생 학자금대출”  
로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③ 제 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u>2년</u>으로 한다.</p> <p>④ (생 략)</p>	<p>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③ --- ----- ----- ----- ---<u>5년</u>-----.</p> <p>④ (현행과 같음)</p>